



토 론

토 론 내 용

사 회 자 : 이상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중재위원)

토 론 자 :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부장)

운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조형래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

토 론 내 용

○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부장)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개정안 중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에 의하여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 임의로 수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하고, 현행 언론중재법 제17조의2와 같이 침해배제청구등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 확산된 기사에 대해서는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의 관계가 입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그 규율대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를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하고 있어 카페, 블로그 등 침해배제대상 기사를 게재한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및 침해배제대상 기사와 관련한 댓글의 경우 언론중재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결국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의 규정이 충돌할 수 있으며, 본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간의 관계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개정안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블로그 등 정보통신서비스 상의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해서 사이트관리자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스스로 침해배제 대상을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게시글 및 댓글이 등록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자가 직접 침해배제 대상 게시물 및 댓글의 URL 등을 특정하여 사이트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사이트관리자의 조치사항, 게시자의 이의제기절차 등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함께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규정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피해구제 조정신청의 대상을 사이트관리자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트관리자의 경우 게시글 및 댓글이 어떤 취지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사이트관리자의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면책받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에 대해 동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게시자의 입장이 조정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조정신청 대상을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의 작성자로 하여 피해자의 인격권과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비교형량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 대상이 사이트관리자이나 실제 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권은 게시자가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트관리자가 조정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검색의 경우, 검색사업자가 검색되는 결과물의 내용 및 검색결과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침해배제대상 기사를 복제, 전파한 모든 대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색에서 제외를 하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자동화된 검색로봇 및 검색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색사업의 속성 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색사업자와 피해자 간의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침해배제대상 기사가 존재하는 게시글의 URL 정보 등을 특정하여 검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해당 내용을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중 유사뉴스서비스전자간행물 개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유사뉴스서비스전자간행물은 그 정의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 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 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로 되어 있어 언론중재법에서 규정하는 언론기사뿐만 아니라 시사에 대한 정보, 논평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파워블로거 등 인터넷 상의 모든 게시물로 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바 이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복잡다단한 디지털 뉴스생태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권리침해의 계속성과 중대성의 판단과정에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으므로 기사 등에 대한 삭제권 남용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개정안 중 침해배제청구권에서 언급한 언론보도의 ‘허위성’, ‘중대성’, ‘계속성’ 등의 개념이 모호합니다. 언론기사 중 100% 허위기사는 없을텐데 허위 정도와 인터넷에서의 계속성 부분에 대한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과 펌글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소셜댓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론사 사이트에 특정 기사에 대한 댓글을 올림과 동시에 그 댓글이 원기사 링크와 함께 본인이 선택한 SNS공간에 올라와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댓글과 펌글이 동시 작동하는 소셜미디어를 경유한 뉴스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는 물론, 국내 소셜미디어도 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 조치가 고강도의 내용규제라고 반발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댓글과 관련하여, 악성댓글을 게재하는 악플러는 극단적이고, 매우 많은 양의 댓글을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의 글이 삭제,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피해구제 영역을 모바일뉴스앱, 뉴스큐레이션앱, 소셜미디어뉴스서비스 등 이른바 ‘유사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이용점유율 혹은 영향력 차원에서 천차만별이므로, 피해구제의 효율화와 규제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영향력이 큰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언론기사를 무기로 기업 등을 협박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는 사이버 언론행위를 ‘유사언론’으로 칭하고 있어, 개정법안의 ‘유사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은 다른 용어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통신심의 영역까지 업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언론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기능해왔습니다. 개정안은 언론피해자가 기사에 달린 댓글로 인한 피해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 언론보도와 통신 게시물의 차이, 통신 게시물을 언론조정중재제도를 통해 처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댓글로 인한 피해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데, 이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처리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을 통해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언론기사에도 적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털 게시물에 대해 굳이 언론중재위원회가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권리침해구제절차로 임시조치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는 무조건적으로 30일 간 블라인드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가 이뤄진 기사의 복제글(펌글)의 경우도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 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하면 펌글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위원회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맞춰 언론중재법도 변화해야 할 것이나, 이미 방송통신심의위 등에서도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기능 조정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현욱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저널리즘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관련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구제 방안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점은 펴글과 악성 댓글을 과연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고 보아야 할지, 그리고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헌법적 가치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가 언론중재법 개정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례 발표에서 보셨겠지만 인터넷 상의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을 보면 모욕성, 비난성 글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이미 댓글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 측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 간이하게 해결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익명성의 사회로, 자신의 불만을 온갖 욕설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성댓글로 무절제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보도내용을 사실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퍼나르는 펴글로 피해 당사자가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이처럼 악성댓글과 펴글이 신속하게 대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개개 댓글이나 펴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피해 구제를 요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한다면 피해구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등 디지털미디어의 현실에서 악성 댓글, 복제와 전파가 용이한 펴글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처럼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창구가 이원화 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번거로움이 많고 신속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언론보도에 대한 조정신청과 더불어 댓글, 펴글에 대한 피해구제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악성댓글을 방치한 포털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들은 피해자의 구제요청이 있을 경우 악성댓글이나 복제보도가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인지 판단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판단을 위한 인력 및 비용 부담이 크며, 그 판단 결과가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위험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댓글 및 펴글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구제는 물론이고 포털사,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부담도 덜어주는 효과적인 조치라 할 것입니다.

포털사 등은 피해자의 권리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 판단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삭제를 행하면 면책되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피해자인 국민과 미디어 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 중 댓글 및 폼글 게시자가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이 게시판에 게시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매우 짧고,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는 게시자가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게시자의 이의신청 권한이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조정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의하면, 보도내용이 허위이거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거나, 사후적으로 부정확하게 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수정, 보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피해 구제 요건을 엄격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할 경우 보도내용이 허위인지, 내밀한 사적영역에 속하는지, 사후적으로 부정확하게 된 것인지 등을 개인이 증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피해구제의 효용이 점점 낮아질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제2조(정의) 제15호의 "언론보도" 개념을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이 공공에게 정보와 논평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항 및 제16조(반론보도 청구의 요건) 제1항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 문구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을 삭제하여 "언론보도 등"으로 하는 것이 개정내용의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닌지 제안합니다.

변화하는 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피해구제 방법도 변화하여야 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조치들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내용들이 모두 법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언론보도피해가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조형래 (조선일보 디지털뉴스본부 취재팀장)

저는 현재 조선닷컴에 근무하고 있어 발표 사례와 유사한 경우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보에 대한 피해구제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으나 폼글이나 댓글로 인한 피

해구제 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닷컴도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행히 아직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통제하에 실명제로 운영되고, 댓글 수도 익명으로 게시가 가능한 게시판 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폼글에 대해서는 난감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비단 명예훼손성 글이 아니라 단순 오보기사라도 퍼가게 되면, 글을 퍼간 각 게시판에 연락을 하고 게시자를 일일이 찾아야 하므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 그 보도가 포털에 검색되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포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Google)에 ‘박근혜 대통령 방미’를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를 올린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언론사에서 댓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 등 외국 포털과 달리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대부분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 홈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포털 페이지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으로 게시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댓글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이 매개한 기사에는 댓글이 만개 이상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많은 댓글에 대해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임시조치 등 포털에 대한 규제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원 (사회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중재위원)

지정 토론자들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피해구제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태 부장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피신청인을 포털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어 윤영철 교수님은 개정안의 침해배제청구권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병선 이사님은 개정안이 언론중재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조현욱

변호사님은 게시자의 이의기간이 짧은 점을 제외하고는 개정안에 대부분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조형래 팀장님은 우리나라의 포털은 언론의 기능을 갖고 있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지정토론자들의 견해에 대해 발표자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콘텐츠팀장)

먼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에 의하여 기사를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침해배제청구 대상에서 포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신문법은 포털이 언론의 기사를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임의로 수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상의 침해배제청구 조치와는 무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게시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자 개인에게 조정결과를 통보하려면 그 개인의 인적사항, 적어도 E-mail 주소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조정결과를 게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게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를 위해 보충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조준원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하에서 발생하는 언론피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일회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방법을 통해 펴글, 댓글로 인한 피해가 일부 구제되고 있습니다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 기사로 인한 피해 및 파생되는 제반 피해를 하나의 창구에서 구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펴글과 댓글의 조정신청 대상을 웹사이트 오퍼레이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수많은 게시자들이 다수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미디어의 속

성을 고려하면, 익명인 게시판에서 게시자 개개인을 파악해 구제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은 구제절차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웹사이트 오퍼레이터에게 관리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제도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판례도 있습니다.

펌글과 댓글은 언론보도의 위법성 여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펌글 같은 경우도, 모든 펌글을 규율하고 구제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구제가 된 언론보도에 한해서 구제 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로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펌글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의 펌글을 보면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서 기사를 편집, 재가공하여 카페나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사를 온전히 전재하지 않고 편집과 재가공을 통해 부분적인 사실관계를 담은 경우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개정안의 기사댓글의 관리 책임과 관련, 포털이 매개한 기사 중 아웃링크한 기사의 댓글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에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링크한 기사는 포털에게 기사 댓글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기사댓글의 위법성 여부는 기사의 위법성 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언론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의견을 게시한 기사 댓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사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판단할 것입니까? 기사내용의 잘잘못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고유 기능이기에 때문에 기사댓글에 대한 구제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 구울화 (언론중재위원회 접수상담팀장)

개정안 내용이 타 기관과의 업무중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언론피해에 관해 상담을 해주는 접수상담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마음에 매우 공감하는데요.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기사에 달린 댓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기사의 펌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구제받도록 하는 것은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중첩 문제는 기관 간에 협의를 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게시글의 URL 정보 등을 특정하여 검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URL 정보 등을 특정하여 제공하는 부분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당연히 피해자가 URL을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피해자를 도와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상원 (사회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중재위원)

정리하자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사업자를 침해배제청구의 피신청인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측은 포털과 언론사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며, 게시자 개개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언론피해를 해결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므로, 포털 또한 인터넷 언론사와 동일하게 피신청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현행법과 다른 기관을 통해 펴글 및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기존 법으로는 온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게시자의 댓글까지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줄 압니다.

언론은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기사의 댓글은 게시자 개인들의 표현행위이지만 댓글게시판은 인터넷언론이 설정한 의제에 관한 넓은 의미에서 여론형성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사 댓글시스템의 설치, 운영관리는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언론사와 포털이 관리하고 있는 기사 댓글이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를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이나 펴글로 인한 구제는 타 기관에서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대

한 피해와 함께 댓글 및 폼글에 대한 피해를 일괄해서 구제해 주는 기관은 없습니다. 피해자는 댓글 및 폼글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를 원스톱으로 구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댓글 및 폼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게시자를 상대로 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법 게시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이트 관리자를 상대로 조정·중재를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

언론중재위원회가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인터넷 상의 언론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 기관 등의 법적 기능과 역할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댓글 문제는 포털에서도 수년 전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실정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방법을 통한 임시조치로 신속하게 댓글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으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쳐 임시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처리가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악성 댓글은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대에 댓글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원 (사회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중재위원)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은 인터넷 상의 언론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언론사, 포털 등 현업 종사자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듬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토론회 주요 쟁점에 관한 Q&A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해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제한된 시간 탓에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아,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Q&A를 게시합니다.

Q1. 개정안에 따른 침해배제청구 시, 기사 생산자가 아닌 포털사에서 기사 내용의 일부 수정이나 삭제 등을 하게 되면 기사에 대한 임의 수정을 금지하고 있는 신문법 규정을 위배하게 되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해배제청구의 대상에서 포털사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요?

A. 신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포털사에 의한 자의적인 기사 수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포털사의 '임의 수정'을 막기 위한 것이지 다른 법률에 의거 발생한 법적 책임 이행에 따른 기사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허위보도에 의한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이 침해되는 경우 성립하는 인격권에 근거한 침해배제청구 시에는 신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포털사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재되어 있는 언론보도에 관해서는 포털사가 인격권 침해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Q2.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인 '허위성', '중대성', '계속성' 등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데에 남용될 여지는 없나요?

A. 법이 적용되는 사회 현상은 매우 복잡다양해서 법률 문장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위성', '중대성', '계속성' 등은 다른 법률에도 자주 사용되며 판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개념은 침해배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개념으로 인해 기사삭제 요청이 남발될 가능성은 없으며 오히려 침해배제의 범위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Q3. “침해배제청구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증명하도록 요구할 경우 개인이 이를 증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피해구제의 효용이 점점 낮아지므로,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A. 침해배제청구권은 언론기사의 수정·보완·삭제 등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에 대한 요건은 엄격히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침해배제청구의 요건으로 ① 허위로 입증된 기사의 중대한 권리침해, ② 인격의 핵심영역에 대한 명백한 침해, ③ 권리침해의 계속성 등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여 침해배제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4. 댓글이나 폼글의 조정신청 당사자를 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해당 댓글이나 폼글의 작성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A. 개정안에 의하면 피해자는 댓글의 경우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게 되고, 위법한 기사의 폼글은 그 폼글이 게시된 사이트의 관리자를 상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삭제 대상인 정보의 게시자는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사이트 운영자의 지위 및 책임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하에서 상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관심을 끄는 인터넷 보도는 폼과 링크에 의해 신속하게 대량으로 퍼져나가고 이슈가 되는 기사에는 수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개개의 댓글이나 폼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또 언론중재위가 그들을 상대로 통지와 출석을 요구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각 게시자로서도 가볍게 쓴 글 때문에 신원이 노출되거나, 중재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는다면 역시 불편하고 바라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둘째, 댓글이나 폼글이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것은 이들이 그 게시를 가능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이트 관리자의 의무는 여러 국가에서 널리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사이트 운영자는 댓글 또는 폼글 게시자 확보에 영업상의 이익을 가지며, 쉽사리 피해자의 삭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게시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피해자의 권리 침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 어려운 판단의 부담에서 벗어나 중재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삭제를 행하면 면책되게 됩니다.

셋째, 개정안은 게시자를 조정절차에 참여시키지 않는 대신 게시자가 그에게 불리한 조정결

과를 통보받고 그에 이의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이 절차에서는 게시자의 인터넷 ID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익명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됩니다), 나아가 이의에 대한 중재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조정 결정 또는 직권조정안 게시 후 7일 이내, 이의에 대한 중재위 결정 후 10일 이내라는 단기의 법정 기간을 정하고 있어 게시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정기간을 넘긴 경우 개정안은 게시자가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소정기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Q5. 댓글 및 펴글 게시자가 조정결정 또는 직권조정안이 게시판에 게시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게시자가 인지하기 어렵고 이의신청 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 A. 댓글 및 펴글에 대한 조정결과는 원칙적으로 게시자 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게시자가 다수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조정결과를 게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댓글 및 펴글의 파급력을 감안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만약 게시자가 해당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6.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의해 임시조치 등 강력한 보호를 받는데 또 개정안과 같이 중재위의 구제절차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요?

- A.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개인(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게시글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당 게시글을 호스팅하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 차단 등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에 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언론중재법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언론 기사가 일반적 정보와 달리 취급받는 이유는 언론(미디어)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기능 때문에 이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사업자의 판단에 따른 사적 규제에 방치할 수 없고, 반드시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확보된 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은 언론기사에 달린 위법한 댓글 및 위법한 기사의 전파·복제물(이른바 펴글)에 관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보에 관해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언론(미디어)의 자유가 향유하는 특별한 보호의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실용적으로도 불편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를 위해 새로운 구제절차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음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펴글에 관해 보면, 언론사의 기사를 퍼간 복제·전파물 역시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보호를 받음이 당연하고(언론의 자유는 전파의 자유를 포함하며,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뉴스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그 펴기사가 게시된 사이트의 운영자(사적 주체임)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의로 이를 삭제 등 임시조치를 하는 것은 그 게시자의 전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현행 관례에 의하면, 인터넷 포털사들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가 포털의 뉴스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도 임의로 임시조치하지 않지만, 일단 포털이 제공·관리하는 타 사이트에 전파·복제된 경우에는 일반 정보와 같이 취급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포털사들은 그 복제보도가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인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입장에 있지도 않고, 그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복제기사의 운명이 좌우된다면 언론보도에 대해 헌법이 부여하는 보장이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나 언론중재위가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한 보도의 전파·복제물에 관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기타 보호조치를 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정보통신사업자나 기타 사이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기사의 댓글은 게시자 개인들의 표현행위이지만, 그것은 인터넷 언론이 설정한 의제에 관해 여론형성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그 댓글 시스템의 관리 역시 인터넷 언론사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댓글의 위법성 여부는 해당 기사의 위법성 여부 판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한 중재위원회가 댓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경제상·실무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 때문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2의 조항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법리상 및 실제상 어려운 언론보도의 댓글 및 펴글에 관해 중재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정안에 의하면 인터넷 언론 기사나 그 댓글 및 복제·전파물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 판단 및 규제 여부를 언론보도에 관한 분쟁 처리 관할권을 갖는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언론의 자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기사는 쉽게 전파·복제되고 그 침해적 효과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 그 구제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부인될 수 없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보도 및 그와 관련한 피해를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보통신사업자, 사이트 운영자 또는 포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문에 관해서는 법적 판단의 부담과 그 오류로 인한 책임부담에서 해방되게 되므로(개정안 제18조의2 제7항) 개정안은 이들을 위해서도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Q7. 개정안에 의하면 댓글, 폼글의 피해구제 관련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요?

A.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댓글과 폼글은 '정보'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두 기관에서 규율하게 되므로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댓글과 폼글이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언론중재법에서 댓글과 폼글을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파생된 정보에 관해서만 조정중재를 행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그 밖의 광범위한 위법·유해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상 정보 규제에 대한 일반 법률이고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언론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법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8. 폼글 피해는 저작권 침해 법리를 인용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A. 저작권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폼글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언론사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은 인격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아닌 저작권자인 언론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폼글 삭제를 저작권으로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언론사에 요청하여 언론사가 포털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언론사가 이에 반드시 협조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편, 언론보도 중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폼글 중 상당수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직접 포털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삭제뿐만 아니라 수정·보완 등 종합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간이하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Q9.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댓글 및 폼글이 등록되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사이트 관리자가 스스로 침해배제 대상을 구분하여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A.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침해배제를 청구하려고 하는 피해자는 직접 침해배제 대상 댓글 및 폼글의 URL 등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조정신청 절차,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사이트관리자의 조치사항, 게시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세부 규정은 위원회 규칙으로 명확히 마련될 것입니다.

Q10. 유사 뉴스서비스 관련 규정은 인터넷 상 모든 게시물을 조정중재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 A. 현행법에 의하면 실제로 인터넷 언론 매체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보도(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 등에 대해서는 그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구제를 위해 중재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발전과 혁신을 거듭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에 비추어 본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 펀딩 서비스, SNS에 의한 뉴스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뉴스서비스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재위원회가 이들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본법의 구제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